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24 2023. 6. 23.(금)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박용규 의원 등 8인

나. 발의일자: 2023년 5월 31일

다. 회부일자: 2023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2023년 6월 9일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O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용규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적 경제기업제품 우선 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여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O '사회적경제기업'을 '충청북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변경 (안 제1조)
- O 기관의 장은 총 구매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함(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영균)

가. 조례 개정 이유

아사회적경제'란 소득양극화와 사회·경제적 불평 등을 극복하고자 공동체 원리에 입각한 '따뜻한 사회', '나눔경제', '공유경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하는 '사회적기업',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성조직인 '협동조합', ▲마을공동체에 기반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을 통해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문제해결을 추구하는 '마을기업', ▲저소득 실업자의 경제적 자활(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생산활동을 하는 '자활기업' 등을 중심으로 '상호 간의 연대와 협력, 호혜의 부조 등 자발적인참여를 이끌어 사회서비스 확충 및 복지 증진, 지역공동체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경제활동을 의미함.

- 충청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취지를 공감하며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 시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현행 조례를 2019년 제정하여 시행¹³⁾해 왔으나. 그 성과가 다소 저조¹⁴⁾한 상황임.
-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비율을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제도적 근거를 보완·강화하여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살린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행 노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주요내용

○ 개정 주요내용는 안 제1조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충청북도 내사회적경제기업'으로 변경하여 본 조례의 목적이 충청북도 내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되며,

13) 2019년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구매 실적 (단위: 백만원)

аг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	동조합	계	비고		
연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9	5,003	1.64%	442	0.14%	5,445	1.78%		
2020	5,136	2.03%	604	0.24%	5,740	2.27%	Ti ユ 2 40%	
2021	10,534	3.09%	1,093	0.32%	11,627	3.41%	┥ 평균 2.60%	
2022	11,168	2.65%	1,223	0.29%	12,391	2.94%		

14) 전국 시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사회적기	l업	사회적협동	조합	계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미ᅶ
2019	135,774	1.88	22,800	0.32	158,574	2.2%	
2020	148,132	2.24	26,670	0.40	174,802	2.64%	평균
2021	204,212	2.83	36,656	0.51	240,868	3.34%	2.95%
2022	277,800	3.01	57,314	0.62	335,114	3.63%	

○ 안 제8조에 기관의 장이 기관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서비스, 공사 포함)등을 구매할 경우, 총 구매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 보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범위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규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는 충청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강화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노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의 제품에 대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우선구매 촉진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충청북도 교육기관 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 타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추세이며,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의 경우 경기·전남·광주·대전·울산 5개 지역에서만 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태임.
- 따라서 충청북도교육청의 본 조례 개정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사업의 체계적인 시행과 실효성 있는 성과를 이끌어 내며, 타 시도 교육청의 모범 사례가 되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되는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시도 및 시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비율 관련 조례 제정현황>

구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교육청					5%	1%	4%		5%					5%			
지자체	5%	5%			5%	3%		3%			5%		5%	5%		5%	

- 또한 개정안의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
- 다만,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품질 및 구매 후 제품 관리서비스 등과 같은 문제가 있을 시, 우선 구매에서 제외하는 등과 같은 우선 구매 예외 사항 등을 시행규칙에 담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품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 관련 계약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 구매 비율 규정으로 인하여 관련 법령과 계약사무 지침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 5. 토 론 요 지: "생략"
-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적경제기업"을 "충청북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다. 제8조 중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경우 총 구매액(재화및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 "한다"를 "하며, 도내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제1조(목적)
교육청이 <u>사회적경제기업</u> 에서	충청북도 내 사회적경제기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u>업</u>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우선구매) 기관의 장은 재	제8조(우선구매)
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u>경우에</u>	<u>경우 총 구</u>
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며, 도내기업 제품을 우선 구
	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 법 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7호, 2021. 12. 21., 일부개정]

-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7. 27.>
 - 1.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
 - 2.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 15., 2021. 7. 27.>
 -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4. 삭제<2021. 7. 27.>
 -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인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27.>

[전문개정 2012. 2. 1.]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10. 31.] [충청북도조례 제3710호, 2014. 10.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률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1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 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 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80호, 2023. 4. 18., 일부개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4. 17.>
 - 1. ~ 8의2. (생략)
 -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 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7호, 2022. 12. 13., 일부개정]
- 제36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 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 (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 12. 21.>
 - ② 학교기업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의 수입으로 하되,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1.>

- 1.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업교육기관 회계(국·공립 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를 말한다)
- 2.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학협력단 회계
- ③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 12. 21.> [본조신설 2003. 5. 27.]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O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재화, 용역 등 구매 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의 조례로, 우선 구매 등 에 대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있어 비용을 산출할 수 없음